# 지방의회법안 (장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04

발의연월일: 2024. 9. 2.

발 의 자: 장경태 · 민병덕 · 박 정

황정아 • 이기헌 • 박지원

황명선 · 김동아 · 김승원

부승찬 의원(10인)

## 제안이유

1991년 이후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의결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기존 중앙집권적 행정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과 자치분권이 현재 시대적 과제로 주목받고 있 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의 독립적 위상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함.

또한, 지방의회는 의사결정기관이자 감사권을 가지나 지방의회의 권한이어야 할 의회 직원에 인사권을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고 있고,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기능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 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확대하여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지방의회의 조직·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의회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다. 지방의회 간 및 지방의회와 공공기관 간 상호 인사교류를 위하여 시·도 단위로 인사교류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의장과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 간 상호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6조).
- 라. 의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이를 계상하도록 함 (안 제27조).
- 마. 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은 시·도의회는 의원정수의 2 배를, 시·군 및 구의회는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32조).
- 바. 의원은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하며, 소속 위원회의 안건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 련하여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도록 함(안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 사. 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 48조 및 제49조).
- 아. 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

# 지방의회법안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의회의 조직·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를 둔다.
- 제3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 2. 예산의 심의 확정
  - 3. 결산의 승인
  -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5. 기금의 설치 · 운용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의 포기
-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조례) ① 의회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② 시·군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는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조례 제정 절차, 공포 방법 등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따른다.
- 제5조(의회의원 선거) ① 지방의회는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 다.
  - ②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제6조(당선 통지 및 등록) ①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및 구·시·군선 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선거구의 의원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

- 는 그 명단을 즉시 해당 의회 사무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해당 의회 사무기구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 제7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 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 ② 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제23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하 "사무기구의 장"이라 한다)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 제8조(정례회)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9조(임시회) ① 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사무기구의 장이 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 최초의 임시회는 사무기구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한다.
  - ③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 ④ 임시회의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1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 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조례로 정한다.

### 제2장 의회의 기관과 경비

- 제12조(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① 의회는 의원 중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군 및 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 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최초집 회일에 실시한다.
  - 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3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 제14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제15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시·도의 경우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며,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6조(임시의장)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 제17조(보궐선거) ①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闕位)된 경우에는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8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 제12조제1항, 제16조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이하 이 조에서 "의장등의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으면 출석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 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 한 사유 없이 의장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9조(의장·부의장 불신임의 의결) ①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의회는 불신

- 임을 의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 ③ 제2항의 불신임의결이 있으면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 제20조(의장·부의장의 사임)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제21조(의장·부의장의 겸직제한)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 제22조(의장의 당적보유 금지) ①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당적을 이탈한 의장이 그 임기를 만료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정당으로 복귀한다.
- 제23조(사무기구의 설치) ① 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를 둘 수 있으며,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 의 장 및 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 제24조(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① 사무직원은 의장이 임명한다.
  - ② 의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의 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③ 의장은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제96조에 따른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제25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① 사무기구의 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로, "시·도"는 "시·도의회"로, "시·군·구"는 "시·군 및 구의회"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장"으로, "시·도지사"는 "시·도의회 의장"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 및 구의회 의장"으로, "부시장·부지사"는 "시·도의회 부의장"으로,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시·군 및 구의회 부의장"으로 본다.
- 제26조(인사교류협의회 등) ① 시·도의회와 시·군 및 구의회는 해당 시·도 또는 관할 구역의 시·군·구 간, 관할 구역의 시·군·구 간, 해당 시·도 또는 관할 구역의 시·군·구와 교육·연구기관 또

- 는 공공기관 간 상호 인사교류를 위하여 시·도 단위로 인사교류협 의회를 둘 수 있다.
- ② 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소속 직원 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소속 직원 간 상호 인사 교류를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 제27조(경비) ① 의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이를 계상한다.
  - ② 의장은 의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는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운영위원회"라 하며, 운영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본회의를 말한다)의 심사를 거쳐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서 정한 예산안 제출기일(이하 이 조에서 "예산안 제출기일"이라 한다) 3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가 의회 소관 예산요구서의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은 직접 의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의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때에는 의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감액내용 및 사유

를 기재하여 예산안 제출기일 15일 전까지 이를 의장에게 송부한다.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른 송부가 있은 때에는 그 감액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예산안 제출기일 7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한다.

#### 제3장 의원

제28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제29조(의원의 의무) ①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제3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

- 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30조(겸직 등 금지)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 1. 국회의원, 다른 의회의 의원
  -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 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임직원
  -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조례로 정한다.

- ④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 라·단체
-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 ⑤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50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의 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1. 제4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29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 ⑥ 의장은 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4항 또

- 는 제5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31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 3.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 4. 그 밖에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비용
  -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 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용은 의 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제1항 각호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④ 구금된 의원이 법원의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비용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소급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 ⑤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32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다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수를 넘지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 1. 시·도의회 : 의원 정수의 2배
  - 2. 시·군 및 구의회: 의원 정수
  -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 • 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 제33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34조(의원의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은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 게 되거나,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 및 결석신 고서를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35조(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① 수사기관의 장은 체포되거나 구금된 의원이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의회의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② 각급 법원장은 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공소(公訴)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36조(의회의 의무 등) ① 의회는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의원의 윤리 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② 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연수 계획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 제4장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제37조(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①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재선거·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에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을 공

개할 수 있다.

- 1.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 2.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 3.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3년 이내에 의원 본인이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 4.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3년 이내에 의원 본인이 대리하거나 고문 ·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 내용
- 5.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3년 이내에 의원 본인이 민간 부문에서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 6.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의 명단
- 7.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다음 각목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 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 지상권 및 전세권
  - 나. 광업권 · 어업권 · 양식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

용되는 권리

- 8. 그 밖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재산사항
-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 등록된 사적 이해관계의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의원(의원 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의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이나 제38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등록 및 변경등록 사항에 관한 검토 과정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변경등록, 공개, 소명 자료 제출의 절차·방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38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제출) 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 37조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 사항을 바탕으로 이해충돌(의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조례로 정한 기한까지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39조(이해충돌의 신고) ① 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에는 안날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하다.
  - 1.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 2.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 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 3.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 4. 의원 임기 개시 전 2년 이내에 의원 본인이 대리하거나 고문·자 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단체
  - 5.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 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 6.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위원 회의 안건 심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수행하는 의원과 조례 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 7. 그 밖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조례로 정하는 자
-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바탕으로 이해충돌여부를 검토하여 의원이 소속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방법·관리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40조(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① 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과정에서 제39조제1항의 신고사항에 해당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표결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의장과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이 이해충돌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제41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특례) ① 의원이 제37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 한 경우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②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자료가 공개된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공개한 것으로 본다.

#### 제5장 교섭단체 · 위원회와 위원

제42조(교섭단체) ① 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교섭단체를 두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 ③ 교섭단체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43조(위원회의 설치) ① 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위원 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제44조(상임위원회의 직무 등)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 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 ② 상임위원회의 종류·소관·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 다.
- 제45조(전문위원과 공무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연구를 한다.
  - ③ 전문위원은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집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 ④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의 직급과 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 제46조(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 요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학식 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전문가 활용의 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71조에 따른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제4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 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그 밖의 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48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 제49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50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5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의원의 겸직, 영리행위 및 이해충돌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

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51조(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① 위원회에서는 해당 의회의 의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52조(위원회의 개회) ①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 ②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53조(연석회의) ① 소관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 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다만, 표결은 할 수 없다.
  -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 제54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공청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55조(청문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안의 심사를 위한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할 수 있다.
  - ③ 청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56조(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 1.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
  -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 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 ② 상임위원회(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를 말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다.
- ③ 상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 없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57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6장 회의

- 제58조(개의) 본회의는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 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 제59조(의사정족수)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 ② 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散會)를 선포한다

- 제60조(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61조(표결의 선포 등)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하고,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 ②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 제62조(표결방법 등) ①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 1. 제12조에 따른 의장 · 부의장 선거
  - 2. 제16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출
  - 3. 제19조에 따른 의장 부의장 불신임 의결
  - 4. 제86조에 따른 자격상실 의결
  - 5. 제93조에 따른 징계 의결
  - 6. 그 밖에 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
  - ②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

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 ③ 의원은 표결에 대하여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 제63조(회의의 공개 등) ① 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64조(의안의 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⑤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 제65조(조례안 예고) ① 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 ②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66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8조(일사부재의 원칙) 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 제69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

회의에 부쳐야 한다.

- ② 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으면 그 의안은 폐기된다.
- 제70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 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 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1조(회의규칙) 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72조(회의록)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 야 한다.
  - ③ 의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의장은 회의록을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7장 청원

제73조(청원서의 제출) ① 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74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 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 제75조(청원의 심사·처리) ①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 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 ②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한다.
- 제76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 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장 행정기관과의 관계

제77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지방자치법」 제34조를 따른 다.
-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조례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조례로 정한다.
- 제78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 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 ② 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 또는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 정 또는 징계를 요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 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또는 징계 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9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나 관계 공무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 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 제80조(서류제출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 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1조(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 등) ① 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그에 소속한 공무원 등의 직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감사청구는 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친 의결서 및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의장 명의로 청구한다.

제9장 사직 • 퇴직 • 궐원과 자격심사

- 제82조(의원의 사직) 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 제83조(의원의 퇴직)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 1.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했을 때
  - 2.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 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
  - 3.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 제84조(궐원의 통지) 의원이 궐원(闕員)되면 의장은 1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제85조(의원의 자격심사) ① 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 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심사 대상인 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제86조(자격상실의결) ① 제85조제1항의 심사 대상인 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② 심사 대상인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제10장 질서

- 제87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의장이나 위원장은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 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이나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경고 또는 제지를 하거나 그 발 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 ②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항의 명에 따르지 아니한 의원이 있으면 그 의원에 대하여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 시킬 수 있다.
  - ③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 제88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한 의원에 대하여 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9조(발언방해 등의 금지) 의원은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 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演壇)이나 단상(壇上)에 올라가서는 아니 된다.
- 제90조(방청인의 단속) ①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표명 하거나 소라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 ③ 방청석이 소란하면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 ④ 방청인에 대한 단속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장 징계

- 제91조(징계의 사유) 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 제92조(징계의 요구) ① 의장은 제91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 ② 제88조제1항을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제2항의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93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4. 제명

- ②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제94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장 보칙

- 제95조(기간의 기산일) 이 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첫날을 산입한다.
- 제96조(의회규칙) 의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 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되어 의회에 재직 중인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시보임용 중인 사무직원을 포함한다)은 제24조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본다.
- 제3조(징계 및 직위해제 중인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 중에 있는 전문위원 또는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 및 직위해제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제4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90조"를 "「지방의회법」 제83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나 비례대표지 방의회의원이 지방의회의장으로 당선되어 「지방의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를 "사무기구의 장에게"로 한다.

③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중 "법령의 범위에서"를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로 한다.

제37조 앞의 "제5장 지방의회"를 삭제한다.

제37조 앞의 "제1절 조직"을 삭제한다.

제3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5장제2절(제39조부터 제46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3절(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4절(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5절(제57조부터 제63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6절(제63조의2부터 제7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7절(제72조부터 제84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8절(제85조부터 제88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9절(제89조부터 제93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10절(제94조부터 제97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11절(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12절(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을 삭제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지방자치법」"을"「지방의회법」"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41조"를 "「지방의회법」 제32조"로, "「지방자치법」 제64조"를 "「지방의회법」 제43조"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40조"를 "「지방의회법」 제31조"로 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68조제3항(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02조제3항, 제103조제2항"을 "「지방의

회법」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45조제5항(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63조 중 "「지방자치법」 제64조"를 "「지방의회법」 제43조"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8조"를 "「지방의회법」 제5조"로 한다.

제67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제1호"를 "「지방의회법」 제30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9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을 "「지방의회법」 제64조제1항"으로 한다.

제71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72조"를 "「지방의회법」 제59 조"로, "제73조"를 "제60조"로 한다.

제152조제5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를 "「지방의회법」 제3조제1항제6호"로 한다.

⑤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를 "「지방의회법」 제3조제1항제6호"로 한다.

⑥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1호 중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을 "「지방의회법」 제78조제2항"으로 한다.

⑦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를 "「지방의회법」 제3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다목 중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를 "「지방의회법」 제3조제1항제8호"로 한다.